

문경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정 2016. 03. 29.

개정 2020. 07. 30.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문경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는 문경시체육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시체육회, 문경시종목단체(이하 “시종목단체”라 한다) 및 그 단체에 속한 개인에게 적용한다. 또한 시체육회, 시종목단체에 속한 개인이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그 단체에 소속되지 않게 되더라도, 소속당시 행한 비위의 징계에 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정관 제36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체육회 및 시종목단체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시체육회의 및 시종목단체의 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체육관련 표창에 관한 사항
4.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및 그 단체에 속한 개인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시종목단체와 읍면동체육회 임원의 연임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심의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7인 이상 15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정관 제36조 제2항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 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관 제36조 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과 문경시청 소속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 위촉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일 기준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민선 초대 위원의 임기는 정관 부칙 제2조 제5항에 따른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사임포함)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8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고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두고 사전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안건·토의내용, 의결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이 기명날인 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이나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징계 혐의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그 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징계 사

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 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법제 및 포상

제12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시체육회의 제 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2. 시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제 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포상대상) 포상은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전국체전, 소년체전)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정부도 포상과 시체육회 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제15조(자체표창의 구분) ① 시체육회 자체 표창은 정기 표창과 임시 표창, 특별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표창으로 문경최고체육상 표창은 매년 대의원총회 개최일에 실시하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부문
2. 감사부문
3. 모범경기단체상

4. 최우수선수상
5. 지도자상
6. 경기상

③ 문경체육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지역체육을 선양한 자에게 임시 표창이나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장애인체육 등 문경체육 발전이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 체육상 수상자에게 패(상장)와 상금 또는 부상을 시상할 수 있다. 다만, 상금과 부상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절차) ① 정부·도 포상은 시체육회의 장 및 시종목단체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다만, 정부·도 및 경북체육회의 요청으로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시 체육상은 시체육회의 장, 시종목단체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제4장 임원심의

제17조(심의대상) 위원회는 정관 제3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심의·의결한다.

1. 읍면동체육회, 시종목단체 임원 후보자
2. 읍면동체육회, 시종목단체 임원 후보자 재심의

제18조(심의절차) ①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하고 민선 초대 임원의 임기는 정관 부칙 제2조 제5항에 따른다.

②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임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면동체육회 및 시종목단체에서 임원심의 요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심의(재심의) 신청서
2. 이력서(사진첨부) 및 개인정보공개동의서
3. 그 밖의 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④ 위원회는 임원심의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그 심의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임원심의를 의결하면 체육회에서는 즉시 임원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징 계

제20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누구든지 시체육회 및 시종목단체의 단체운영 및 대회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1. 단체 운영과 관련한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부정 참가, 승부조작, 편파 판정,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질서 문란 행위
3. 폭력 및 성폭력
4.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사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감사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한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 또는 객관적인 증

빙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조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를 아니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징계심사 도중에 사임(사직),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시체육회 및 시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2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는 자의 신분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②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가.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③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가. 중징계 :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감봉

④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가. 중징계 : 심판정지, 자격정지, 강등,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⑤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가. 중징계 :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제23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접수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징계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폭력·성폭력
3. 승부조작, 편파판정

③ 징계의 시효는 위원회가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2항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신고·접수일부터 심의·의결 전일 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제26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체육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폭력, 성폭력
3. 승부조작, 편파판정

③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시체육회 및 시종목단체에서 감경, 해제할 수 없다.

제27조(징계의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즉시 이를 문서로 징계협의를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재심의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재심의 요구) ① 징계협의자는 위원회의 징계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재심의 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재심의 하거나 경북체육회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징계의 효력 등) ①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협약자의 재심 요구가 없을 경우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28조 제3항에 따라 재심의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협약자가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협약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부가금) ①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라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의 귀책사항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부과금액이 판결금액 보다 많을 경우 감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징계협약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거 징계부가금 결정·통보에 대하여 징계협약자가 불복하는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⑤ 본 조 및 징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경북체육회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징계의 보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징계한 사항은 징계결정이 완료된 즉시 이를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체육회는 징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경북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행정처리) 회원 종목단체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선수·지도자·동호인 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경시체육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3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징계 혐의 자 인 적 사 항	① 소 속	② 직 위 (급)	③ 성 명
④ 의 결 주문			
⑤ 이 유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스포츠공정위원회</p> <p style="text-align: center;">위원장 인</p>			

의결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주 소			
의결주문				
이 유				
<p>년 월 일</p> <p>스포츠공정위원회</p> <p>위 원 장</p> <p style="text-align: right;">인</p>				

※ 의결주문 징계부가금은 배 원 에서 배 원 으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인적 사항	① 성 명		② 소 속	
			③ 직 위(급)	
	④ 주 소	(연락처 :)		
⑤ 출 석 이 유				
⑥ 출 석 일 시				
⑦ 회 의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4.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채택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3조(출석요구)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인) </div>				

.....(절 취 선).....

인적 사항	① 성 명		② 소 속	
			③ 직 위(급)	
	④ 주 소			
본인은 귀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성 명 (인) </div>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